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지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사 채 보 증 약 정 서(기업용)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 소

(본인)

주 소

위 은행과 본인 사이에 본인이 년 월 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 회 사채(이하 “사채”라 합니다)에 대하여 은행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함에 있어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1조 보증의 부탁과 승낙

①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사채원리금의 지급보증을 부탁하였고 은행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사채지급보증 총액은 금 원으로 합니다.

1. 사 채 원 금 : 금 원
2. 사채이자총액 : 금 원

②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그 후 동조 동호에 의하여 금리연동 사채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이와 다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사채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은행에 대하여 사채 원리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 없으면 은행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 은행이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보증료의율은 연 %로 하고 본인은 다음의 기일에 그 다음 기일까지의 보증료를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매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② 이자후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되 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증료 지급기일에 정산하고, 보증료 지급기간 중에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합니다. 이자 선급조건인 경우, 제1항의 보증료는 제4조 제6호에 의한 금리연동 사채이자율 적용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금액에 터 잡아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자지급기일과 보증료 지급기일이 다를 때에는 이자지급 기일에 증감된 이자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일에 보증료를 은행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적용한 지연배상금률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

는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지연배상금률은 제1항 보증료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초과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④ **본인**은 제10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곧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3항의 지연배상금률에 해당하는 특별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통지도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해당하는 특별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사채의 발행조건

이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제 회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원
3. 사채권의 형식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사채
4. 사채권의 종류 : ()만원권, ()만원권, ()만원권, ()만원권의 중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 권면금액의 %로 하되, 동 가액이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에서 정하는 청약일의 발행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상이할 경우에는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6. 사채의 이율 :
 - 가. 확정금리인 경우
사채발행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로 하되 동 이자율이 사채발행인수실무협의회가 정하는 청약일의 이자율과 상이할 경우에는 청약일의 이자율로 합니다.
 - 나. 변동금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산정·공시하는 매 이자지급기간 초일의 직전영업일의 91일물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의 최종호가수익률에 가산금리 %를 가산한 율로 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과 상환기일 :
사채의 원금은 년 월 일에 전액을 상환합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합니다.
8. 이자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이자는 사채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며 다음 이자 지급기일에 매 개월분씩을 선급(후급)합니다. 그러나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9. 사채원리금지급장소 :
10. 사채의 납입 기일 : 년 월 일
11. 사 채 의 발 행 일 : 년 월 일
12. 사채의 이자기산일 : 년 월 일
13. 사채발행의 방법 :

제5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제10호 제외)과 다음 사항을 적으며 **본인**이 기명날인후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

1. **본인**의 명칭 :
2. **은행**의 명칭 : **(주)하나은행**
3. 사채의 보증총액 : 금 원
원금 원
이자총액 원

위 이자총액은 사채발행일 현재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그 후 동조 동호에 의하여 금리연동 사채이 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이와 다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합니다.

4. 보증사채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은행은 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인)

5. 지급보증기간의 표시 및 그 기간내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 채무가 소멸된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이 사채를 보증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원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부터 3월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행청구 없으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6. 사채보증을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인 사실의 표시 - 사채권의 앞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이 사채는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과의 원리금 지급보증 약정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사채입니다.

7. 은행이 확인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 - 사채권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채가 사채임을 확인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이 확인이 없는 채권이나 변조·위조 기타의 사고채권에 대하여는 은행은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상 호 :

주 소 :

9. 사채권의 번호 :

제6조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본인은 사채청약서에 상법 제474조 소정 기재사항 이외의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1. 제5조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항
2. 은행과 본인 사이에 보증에 관한 조건은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은행과 본인이 이를 비치 공시한다는 뜻

제7조 사채권의 작성과 견양제출

본인은 사채권의 서식을 은행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사채권을 인쇄한 후 그 견양을 은행에게 제출합니다.

제8조 사채권의 분할·병합 금지

본인은 사채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아니합니다.

제9조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

- ① 본인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은행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지급자금을 그 지급기일 전일까지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② 본인이 사채원리금 지급업무를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계약체결후 곧 그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은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전일까지 그 지급대행자에게 지급자금을 인도하기로 합니다.
 2. 지급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제1호의 지급자금을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기일 영업개시 즉시 지급불능의 사실을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주채무 이행의무와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은행이 보증한 사채원리금 지급의 주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제9조에 의한 지급대행자에게 인도하거나 기일에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여 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 ② 본인은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지급기일의 5일전까지 그 지급의 가능여부를 은행에게 통지합니다.
- ③ 본인은 제1항에 의한 사채이자 또는 원금의 주채무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곧 그 내용을 은행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은 제9조 제2항 제2호의 통지나 제10조 제2항에 의한 지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 제3항에 의한 주채무이행 통지가 없는 때에는 사채원리금의 지급기일 도래후 사채권자의 청구있는 대로 본인에 대한 사전통지없이 보증채무로서 사채원리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구상과 지연배상금

- ① **은행**이 제11조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게 이를 상환합니다.
-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그 금액에 대하여 제3조 제3항에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사전구상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구상금은 기일에 지급할 사채원리금을 사전 구상일로부터 기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금리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할인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책임

- ① **은행**은 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외에 사채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사채의 발행·관리·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15조 통지사항

본인은 약정상의 사채 상황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의 실효

본인이 이 약정일부터 60일내에 사채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연히 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17조 약정서의 비치·고시

은행과 **본인**은 이 약정서의 사본을 비치하여 **본인**의 주주·채권자 또는 사채용모자나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청구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약정비용

이 약정에 관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9조 약정의 변경

- ① **은행**은 채권의 보전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과 **본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20조 등록사채에 관한 특약

- ① **본인**이 당해사채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등록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약정서 제5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조 및 제8조의 “사채권”을 사채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채권자가 당해사채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권의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본인**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채권을 발행합니다.
- ④ **본인**이 등록사채를 발행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등록부” 기재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본 1부를 원금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합니다.

제21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3-06-1035(5-4)(2016.06. 개정)
(보존년한:왕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약관-83호(2016.04.11)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은행**과 **본인**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2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23조 기타특약사항

	본인	(인)
--	----	-----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은행**과 **본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 지급보증 의뢰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담자	직위:	성명:	(인)
-----	-----	-----	-----